

행복한 도민

신뢰받는 의회

제363회

임시회

2018. 3. 22.(목)

검 토 보 고 서

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계획안



건설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정일하

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3월 14일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3월 15일

3. 제안이유

201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: 1,250백만원

○ 필요성

- 오송첨복재단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에서 생산하는 원료의약품 원액의무균 충전, 포장을 위한 완제의약품 제조시설 구축
- 원액 생산위주에서 기업의 완제품(임상용 및 상업용)생산의뢰 증가로 오송첨복재단 운영수입 증가 및 조기 자립화 달성

○ 근거법령

- 「첨복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 제3항
- 「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 조례」 제14조 제1항

나.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: 200백만원

○ 필요성

- 오송바이오밸리 조기 완료를 위해서는 기업·기관 유치는 물론 바이오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
- 바이오 벤처기업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업사업으로 추진

○ 근거법령

-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6조의 4 제4항
- 「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<2018년도 바이오환경국 출연계획안>

연번	실과명	출연기관	사 업 명	출연금액	비고
계		2개 기관		1,450	
1	바이오	오송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	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건립	1,250	신규
2	정책과	충북창조경제 혁신센터	바이오벤처기업 성장프로그램 운영 지원	200	

5. 검토의견

- 가. 출연 계획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출연을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,
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 전,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됨
- 나. 금번 출연안에 대해 관련규정에 의거 출연금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나,
- 다.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예산의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해당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합목적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